

# 일반대학원 IT융합정보보호학과 내규

개정 2024.11.22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IT융합정보보호학과 및 IT융합정보보호학과(계약학과)의 학사운영 관련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내규는 IT융합정보보호학과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에 적용된다.

## 제2장 학위과정

### 제3조 (학위과정)

- IT융합정보보호학과에서는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.
- 석·박사 통합과정(이하 "통합과정"이라 한다)은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.

## 제3장 입학전형

### 제4조 (전형구분)

IT융합정보보호학과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.

### 제 5 조 (지원자격)

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석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(예정자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박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(예정자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석·박사 통합과정 : 동조 제1호(석사학위과정)를 적용한다.

### 제 6 조 (입학전형위원)

-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.
- 입학전형위원은 학과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학전형 지원자를 평가한다.

## 제7조 (입학전형방법)

### ① 일반전형

1.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를 병행한다
2.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.
  - 가. 대학 및 대학원 성적
  - 나. 학업 및 연구계획서(소정양식)
3.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.
  - 가. 전공에 대한 지식
  - 나.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
  - 다. 전공에 대한 적성
  - 라. 해당 학과 학업에의 지속성
  - 마.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성역량
  - 바. 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학과 전공과의 연관성

### ② 외국인전형

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입국사증 및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 지원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.

### ③ 편입학전형

편입학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한다.

## 제8조 (평가기준)

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총점 100점만점으로 하며,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.

# 제4장 학위 취득 요건

## 제9조 (석사학위 취득요건)

IT융합정보보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IT융합정보보호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수강한 교과목들이 이수학점 및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② IT융합정보보호학과 석사학위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)에 합격하여야 한다.

- ③ IT융합정보보호학과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
- ④ 국내 논문지 또는 국제 학술대회 주저자로서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박사학위 취득요건)**

IT융합정보보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IT융합정보보호학과 박사학위과정 중 수강한 교과목들이 이수학점 및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② IT융합정보보호학과 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)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③ 반드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고, 청구논문 심사에서 제시된 논문 발전계획을 충실히 실행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중간심사를 통과하고, 반드시 최종논문심사를 갖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.
- ④ SCI(E)급 국제저명학술지 공동저자(교신저자 포함)이상으로서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

**제11조 (연구활동)**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지도교수 승인 시 예외로 할 수 있다. 연구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.

**제5장 종합시험**

**제12조 (시험시기)**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.

**제13조 (시험과목)** IT융합정보보호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IT융합정보보호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으로서, 담당 교강사가 시험응시 학기에 출제 및 채점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② 일반대학원 타 학과에서 수강한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전공 또는 본인 연구분야와 관련이 있고, 담당 교강사가 시험응시 학기에 출제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, 과목수에 제한 없이 포함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도교수로부터 수강한 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한다.

**제14조 (응시자격)**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단, 재학연한초과자는 연구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응시절차)**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3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16조 (시험위원)** 응시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주임교수가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내용, 유형 등을 협의한다.

**제17조 (출제방법)**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**제18조 (합격인정 점수)**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

**제19조 (시험시기)**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.

**제20조 (시험결과관리)** 학과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종합시험면제)** 대학원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22조(준용)**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.